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72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25. 10. 12.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,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의 능력 개발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2)
- 나. 청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3)
- 다.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의4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, 제17조, 제19조, 제23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 333백만 원 반영 예정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5. 9. 1. ~ 2025. 9. 21.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- (7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, 제15조의3,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청년의 능력 개발 등) ① 군수는 취업난을 비롯한 사회·경제·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창의적·전문적 청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과정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·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의3(청년의 고용촉진 등) ① 군수는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청년 인턴사업 등 고용확대 사업
2.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
3.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
4. 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

제15조의4(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)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5조(청년정책 사업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15조(청년정책 사업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의2(청년의 능력 개발 등)</p> <p>① 군수는 취업난을 비롯한 사회·경제·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창의적·전문적 청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과정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·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5조의3(청년의 고용촉진 등) ①</p> <p>군수는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① 군수는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관 등에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사업에의 청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<신 설></p> | <p>1. <u>청년 인턴사업 등 고용확대 사업</u> 2. <u>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</u> 3. <u>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사업</u> 4. <u>그 밖의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</u></p> <p>제15조의4(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) ① <u>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|

관 계 법 령

□ 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

3. “청년지원”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4. “청년정책”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.

제17조(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9조(청년 능력개발 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·재능·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청년 문화활동 지원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보완하고,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가. 청년 체험형 인턴 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, 운영비
- 나. 달성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

3. 관련조문

- 가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」 개정(안) 제15조의2, 제15조의3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인 건 비 : 매년 300백만원 정도
(3개년 최저임금인상률 평균 약2.3%반영)
- 행사운영비 : 매년 3백만원 정도(홍보비, 심사비 등)
- 사 업 비 : 매년 30백만원 정도(자격증 응시료 지원)

나. 추계 결과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」 개정(안) 시행에 따라 연333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다. 재원조달방안 : 자체예산 약 333백만원 정도(연간)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기획전략국 홍보협력과 인구청년정책팀장 이다해

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26) | 2차년도 (2027) | 3차년도 (2028) | 4차년도 (2029) | 5차년도 (2030) | 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세 입 | 333,931 | 340,852 | 347,931 | 355,172 | 362,578 | 1,740,464 |
| 자체수입 | 333,931 | 340,852 | 347,931 | 355,172 | 362,578 | 1,740,464 |
| 의존재원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 출 | 333,931 | 340,852 | 347,931 | 355,172 | 362,578 | 1,740,464 |
| 인건비 | 300,931 | 307,852 | 314,931 | 322,172 | 329,578 | 1,575,464 |
| 행사운영비 | 3,000 | 3,000 | 3,000 | 3,000 | 3,000 | 15,000 |
| 사업비 | 30,000 | 30,000 | 30,000 | 30,000 | 30,000 | 150,000 |
| 재원 조달 | 333,931 | 340,852 | 347,931 | 355,172 | 362,578 | 1,740,464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- | - | - | - | - |
| | 보조금 | - | - | - | - | - |
| | 지방교부세 | - | - | - | - | -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333,931 | 340,852 | 347,931 | 355,172 | 362,578 |
| | 지방세 | 333,931 | 340,852 | 347,931 | 355,172 | 362,578 |
| | 세외수입 | - | - | - | - | - |
| 지방채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기 금 | - | - | - | - | - | - |
| 특별회계 | - | - | - | - | - | - |
| 군 비 | 333,931 | 340,852 | 347,931 | 355,172 | 362,578 | 1,740,464 |
| 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 | - | - | - | - | - | - |